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45 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 김현정 • 모경종 • 민병덕

민형배 · 박상혁 · 이광희

이상식 · 정성호 · 정준호

한정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64조제1항, 제68조제1항, 제129조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4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제68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제129조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)	제64조(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)
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	①
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, <u>대차</u>	<u>재무</u>
<u>대조표</u> , 손익계산서와 잉여금	<u>상태표</u>
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	
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	
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	·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68조(출자 1좌 금액의 감소) ①	제68조(출자 1좌 금액의 감소) ①
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	
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	
주일 이내에 <u>대차대조표</u> 를 작	<u>재무상태표</u>
성하여야 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29조(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)	제129조(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)
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또는	
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기총	
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	
에 사업보고서, <u>대차대조표</u> , 손	<u>재무상태표</u>
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	
는 손실금의 처리 방법을 적은	
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	
한다.	<u>.</u>